

2026년 제2차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

환경교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『2026년 제2차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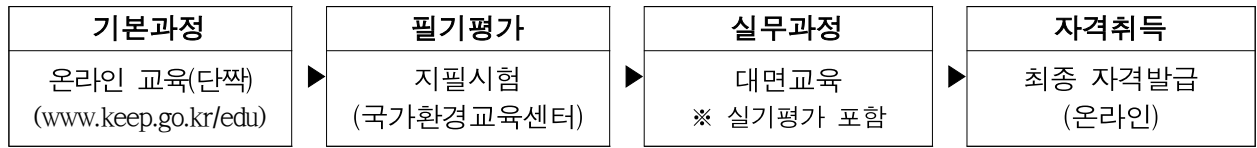
2026년 6월 10일

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

(사)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이사장
(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)

-
1. 과정명 : 2026년 제2차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
 2. 교육일정 : 2026. 7. 15.(수) ~ 2026. 11. 7.(토) / 144시간
 - 1) 기본과정 : 2026. 7. 15.(목) ~ 8. 4.(화) / 온라인(21일간, 54시간)
 - ※ 환경교육단짱(www.keep.go.kr/edu) 내 기본과정 온라인 강좌 수강
 - 2) 필기평가 : 2026. 8. 29.(토) / 장소 : 대전
 - ※ 온라인 기본과정 이수 후 필기 평가 응시
 - 3) 실무과정 : 2026. 9. 12.(토) ~ 11. 7.(토) / 오프라인(15일, 90시간)
 - ※ 기본과정 이수 및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 - ※ 기본과정 신청한 기관에서 수강
(ex. A기관의 기본과정 수강 → A기관의 실무과정 수강)
 - ※ 교육시간 : 09:30~16:30(6시간/일) / 매주 토·일, 총 15일, 90시간
 - 4) 실기평가 : 2026. 11. 21.(토) / 실무과정 수료자 대상

<참고 :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절차>



※ 교육과정 세부내용 안내 :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 (keep.go.kr/license)」 참조

3. 교육장소

가. 기본과정 : 환경교육단짱(www.keep.go.kr/edu) 온라인 플랫폼

나. 실무과정 :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 강의실

1)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(삼도이동)

2) 문 의 : 064)722-9431~2

4. 모집인원

가. 기본과정 : 40명

나. 실무과정 : 30명

※ 기본과정 필기평가 합격자 중 해당 기수 기본과정 수강생 우선선발

※ 과정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(20명)

5. 참가 자격요건(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1 참조)

가. 누구나(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)

나. 거주지역 제한 요건 없음

6. 교육수수료 : 시간당 10,000원/인

가. 비용 : 총 900,000원

1) 기본과정(54시간, 온라인) : 무료(온라인 교육으로 수수료 제외)

2) 실무과정(90시간, 대면교육) : 900,000원(*90시간×10,000원)

* 실기평가 응시자 대상 실기평가 수수료 50,000원 별도 납부

* 교육수수료에는 식비, 숙박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(숙식 미제공)

나. 결제 방법 : 계좌이체(※ 카드결제 불가)

※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

다. **결제 시기 : 실무과정 등록 시 일괄납부**

※ 교육수수료는 기본과정 등록 시 납부하지 않음(실무과정 선정 시 별도 안내)

라. **교육과정 참여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교육비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(붙임1)을 준용함**

※ 교육비 반환기준은 실무과정 운영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

7. 교육신청 및 선정

가. 신청 기간 : 2026 7. 1.(수) 10:00 ~ 2026. 7. 3.(금) 18:00 (3일간)

나. 신청 방법

1)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(www.keep.go.kr/license) 회원가입 후 로그인

2) 메인화면 ▶ [이력관리] ▶ (필수) 기본정보 입력, (선택)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 제출

* 3급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이력관리 - 면제과목 등록 및 증빙서류(성적증명서) 제출 필요

3) [교육·평가 신청] ▶ [양성과정 신청] ▶ 제주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기본과정 교육신청 [바로가기] 클릭

* 양성과정 회차별 1개 기관만 신청 가능(기관 중복신청 불가)

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 자료실 내 공지글(환경교육사 자격평가 사이트 매뉴얼)의 첨부파일 참조

다. 선정 절차

1) 선착순 선발

2) 선정결과 공지

- 일자 : 2026. 7. 9.(목)

- 방법 : 선정자 개별 통보

8. 등록

가. 기본과정

- 등록기간 : 2026. 7. 9.(목) ~ 13.(월) 17시
- 등록방법 : 단짙 입과
- 추가등록 : 등록 취소 의사를 밝히거나 등록 기간 내 단짙 미입과 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대기자에게 별도 안내

나. 실무과정

- 등록방법 : 실무과정 시작 전 별도 안내
- 등록방법 : 교육수수료 납부
- 추가등록 : 등록 취소 의사를 밝히거나 등록 기간 내 교육수수료 미납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대기자에게 별도 안내

9.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

가. 환경교육사 3급 교육과정(144시간 이상)

과정	방법	교육 내용		시간			비고 (장소 등)
		과목명	계	이론	실습		
기본과정 (54시간)	온라인	환경과 철학	6	6	-	환경교육단짙 (www.keep.go.kr/edu)	
		환경교육론	12	12	-		
		환경생태학	12	12	-		
		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	15	15	-		
		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	9	9	-		
		소 계	54	54	-		
실무과정 (90시간)	오프라인	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	18	6	12	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제주도내 일원	
		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24	6	18		
		지역환경문제 탐구	12	3	9		
		환경교육과 의사소통	12	3	9		
		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	6	3	3		
		선택교과	18	13	5		
		소 계	90	34	56		
총 계			144	84	60		

나. 교육방법

1) 기본과정 : 온라인 54시간 이수

2) 실무과정 : 오프라인 90시간 이수

* 기본 강의장소 :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 강의실

* 선택교과 현장교육 :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

다. 교육 세부일정

1) 기본과정 교육일정

- 교육기간 : 2026. 7. 15.(수) ~ 8. 4.(화) / 21일간, 54시간

- 과 목 : 환경과 철학, 환경교육론, 환경생태학,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,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

2) 실무과정 교육일정

- 교육기간 : 2026. 9. 12.(토) ~ 11. 7.(토) / 총 15일, 90시간

- 세부 일정표(안)

일자	시간		과목명	세부 과목
9/12(토)	09:30~10:00	-	오리엔테이션	오리엔테이션
	10:00~13:00	3	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환경교육 학습이론
	14:00~17:0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론
9/13(일)	09:30~12:3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자원과 매체의 이해
	13:30~16:30	3	선택과목	제주 기후 변화의 현황과 전망
9/19(토)	09:30~12:30	3	선택과목	사회환경교육과 환경교육사의 이해
	13:30~16:30	3	지역 환경문제 탐구	지역 환경문제와 환경교육
9/20(일)	09:30~12:3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 워크숍1[유아]
	13:30~16:3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 워크숍2[초등]
10/3(토)	09:30~12:3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 워크숍3[중등]
	13:30~16:30	3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	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 워크숍4[일반]
10/4(일)	09:30~12:30	3	환경교육과 의사소통	환경교육 커뮤니케이션
	13:30~16:30	3	환경교육과 의사소통	환경교육 커뮤니케이션 워크숍
10/10(토)	09:30~12:30	3	선택과목	유네스코 다중국제보호지역의 현장탐구
	13:30~14:30	1	선택과목	제주 자원순환 정책의 이해

	14:30~16:30	2	선택과목	제주 자원순환 인프라시설 현장탐방
10/11(일)	09:30~12:30	3	선택과목	플라스틱은 왜 문제가 되는가?
	13:30~16:30	3	선택과목	2035 탄소중립 제주의 로드맵
10/17(토)	09:30~12:30	3	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저작권 및 저작물 워크숍
	13:30~16:30	3	지역환경문제 탐구	지역환경문제 탐구 세미나[지역 환경 쟁점 탐구]
10/18(일)	09:30~12:30	3	지역환경문제 탐구	지역환경문제 탐구 세미나[광역 및 국가 쟁점 탐구]
	13:30~16:30	3	지역환경문제 탐구	지역환경문제 탐구 세미나[시민 참여 방법 탐구]
10/24(토)	09:30~12:30	3	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
	13:30~16:30	3	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분석 워크숍
10/25(일)	09:30~12:30	3	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워크숍
	13:30~17:30	3		
10/31(토)	09:30~12:30	3	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수업지도안 개발 및 시연 워크숍
	13:30~16:30	3		
11/1(일)	09:30~12:30	3	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스피치 및 의사소통 실습 워크숍
	13:30~16:30	3		
11/7(토)	09:30~12:30	3	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	안전관리 이론과 사례
	13:30~16:30	3		안전관리 워크숍

※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. 평가 방법 및 이수 기준

<참고 :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>

구분	평가방법	합격기준
1. 필기평가	정량평가	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
2. 실기평가	정성평가 (수업지도안 30점+ 수업시연 및 70점)	총 100점 만점으로, 70점 이상인 자

- 1) 환경교육사 자격을 위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(수행평가)로 구분함
- 2)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교육생은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, 필기 또는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2년 이내에 평가 재응시 가능함
- 3)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,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등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운영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

10. 자격제한(법 제16조제2항 관련)

1. 피성년후견인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습지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공원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

나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

다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(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라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 및 제10조의 죄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3.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.

11. 기타사항

가.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(실적) 확인서를 작성·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지도사 본인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

나. 기본과정을 이수한 기관에서 실무과정 수료 및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추후 실무과정 모집 시 동일 기관에 접수해야 함.

다. 교육수료 후 평가를 통과하였어도 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으며, 납부한 교육수수료도 환불 불가. 교육 신청 전 본인이 자격 제한사항이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함

12. 양성기관 정보

가. 양성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
(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)

나. 문 의 처

(유선) 064-722-9431~2

(이메일) jeec@jeec.or.kr

[붙임1] 교육비 환불 규정

< 교습비등 반환기준 >

(학원의 설립·운영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비고

- 총 교습시간은 실무과정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[붙임2]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

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

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 관련)

구분	과목	인정과목
필수영역	환경과 철학	환경학개론, 환경철학, 환경보호론, 환경사회학 등 1과목
	환경교육론	환경교육론, 지속가능발전교육론 등 1과목
	환경생태학	환경생태학, 생물환경론 등 1과목
	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	수질환경(학), 수질오염(론), 토양환경(학), 토양오염(론), 대기환경(학), 대기오염(론), 환경과에너지, 자원과 에너지, 환경화학, 환경일반화학, 소음진동(학), 자원과폐기물관리(학),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(론), 환경보건(학), 환경과건강, 환경위생및보건 등 2과목
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	지구환경론, 환경지리학, 국제환경협력 등 1과목	